
2021년 [사]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정기종합감사 결과

전라남도

시정 요구

제 목 재정정보증 등 회계분야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사단법인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사단법인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자원봉사활동법」과 「전라남도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사단법인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회계 및 계약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회계관계 직원 재정정보증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단법인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회계규정」(이하 "센터규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직원을 피보증인, 보증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센터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르면 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고 재정정보증의 한도액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1천만 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정보공개법」 등의 규정에 따라 센터장의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에 노력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팀)는 센터장을 비롯한 회계관계 직원 등 3명에 대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재정정보증을 하여야 했으나, 종합감사일(2021. 3. 12.)현재 운영지원팀장과 회계업무담당자만 신원보증보험(SGI서울 보증)에 가입하고 센터장은 보험가입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회계관계 직원이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여 「센터규정」과 「지방회계법」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센터장 업무추진비 공개 미 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센터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 규정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806호, 2020. 2. 25.)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은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금액, 인원수, 사용방법(카드사용 여부) 등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팀)는 [표] '2018~2020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명세'와 같이 2018 ~ 2020년 기간 동안의 업무추진비 집행액 8,741천 원의 집행내역을 종합감사일(2021. 3. 12.)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표] 2018~2020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명세

(단위 :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계	4,800,000	4,800,000	4,800,000
	시책업무추진비	2,400,000	2,400,000	2,400,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00,000	2,400,000	2,400,000
사용액	계	1,345,200	2,870,000	4,525,400
	시책업무추진비	386,000	1,260,000	2,175,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59,200	1,610,000	2,350,400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집행 잔액	계	3,454,800	1,930,000	274,600
	시책업무추진비	2,014,000	1,140,000	225,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40,800	790,000	49,600
공개 금액	계	0	0	0
	시책업무추진비	0	0	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0	0	0
미 공개액		1,345,200	2,870,000	4,525,400

※ 자료: 전남자원봉사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도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는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출하지는 않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장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센터장을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재정보증을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공개된 업무추진비 8,740,600원의 사용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의 업무 연찬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라남도

주의 요구

제 목 수해복구 도배, 장관 지원사업 부적정
기 관 명 사단법인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사단법인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는 2020. 8. 8. 도내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담양군 등 5개 시·군 200가구에 도배, 장관 지원사업¹⁾을 하였다.

2.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는 공사의 경우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7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사업량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사단법인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정관」 제35조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세입세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1) 사업기간 / 사업비 : 2020. 9월 ~ 10월 / 84가구 80,000천원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팀)에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 등 후속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나, 2021. 2. 23. 2021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의 승인²⁾을 받은 후 종합감사일(2021. 3. 12.) 현재까지도 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특히 수해복구 도배, 장관 지원사업은 84가구가 완료된 것으로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자료 확인 결과 57가구의 사진 자료만 첨부되어 있어 감사 기간 동안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종합감사일(2021. 3. 12.) 현재까지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2. 무자격 업체와 전문공사 추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담양군 담양읍 등 10개 읍·면 84가구에 도배, 장관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9월 ~ 10월까지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다.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사, 용역, 물품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분할발주 여부 및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르면 건설 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1,500만원 미만)를 제외하고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과 공정한

2)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이 서울 출장 등 바쁘다는 사유로 종합감사일(2021. 3. 12.) 현재까지 결과 보고 미이행

경쟁, 그리고 최적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계약방법 등을 검토하고 계약 목적물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자원봉사센터(활동지원팀)는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위 도배, 장판 지원사업은 전문공사로서 해당 전문공사업³⁾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인 ○○○가구 실내장식⁴⁾과 계약금액 35,200천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무자격 업체인 ○○○가구실내장식이 해당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와 함께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시공참여를 불가능하게 하여 위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는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대책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장은

- ① 「사단법인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정관」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을 철저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 발주 시 해당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사업을 추진하시고,
-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의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상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4) 담양군 소재 업체로 사업자등록증에 인테리어 자재 및 씽크대 제조업체